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사업내용을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과 동일하도록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용어 등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다. 치매지원센터 사업 현행화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타 법령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9.15.~10.0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법제명 등을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내용이 통일되도록 조문을 바로잡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함.

또한 제4조제5항에서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2020.8.31.)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와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서도 문서의 진정의 추정을 “공증”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안 제3조**는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입법 명확성과 경제성을 도모함.
- **안 제10조**는 관련 법령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상위법령과 관계 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개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법적 통일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치매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